

제주지방법원 2023. 1. 19 선고 2021가단61163(본소), 2022가단53770(반소) 판결
[청구이의 · 공사대금]

전 문

원고(반소피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한별

담당변호사 허종선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현애

피고(반소원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대륜

담당변호사 서현주, 신은향, 강영철, 정찬우, 심재국

변 론 종 결 2022. 10. 27.

판 결 선 고 2023. 1.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1차806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21,7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 24.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의 1/3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하고,

반소를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다음부터는 ‘피고’라고만 한다)의 원고(반소피고, 다음부터는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21차806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5,255,3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1. 24.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9. 5. 20. 원고와 제주시교육지원청이 원고에게 발주한 ‘C초등학교 벽체보수공사’와 관련하여 계약금액 4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21. 6. 18. 추가공사대금 7,791,680원이 있음을 전제로 최종공사대금 51,791,680원 중 31,791,680원의 공사대금을 청구원인으로 제주지방법원 2021차806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21. 6. 22.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원고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2021. 7. 13.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추가공사대금은 부존재하고, 계약금액이 44,000,000원이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제주시교육지원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최초 공사금액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변제액이 얼마인지가 쟁점이다. 원고는 2019. 6. 10. 11,200,000원, 2019. 8. 5. 10,000,000원, 2019. 9. 11. 10,000,000원, 2019. 1. 23. 10,0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지급명령 당시 2019. 9. 11. 변제받은 것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고, 2019. 6. 10.자 11,200,000원은 D 센터 4층 방수공사로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도 사실 확인 후 피고의 주장을 인정하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공사대금은 30,000,000원이 된다.

다음으로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추가공사는 없었고, 피고는 원고 현장소장이 추가공사를 지시하고 견적서를 제출하면 책임지고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한다.

원고 현장소장 E과 피고의 문자내용에 따르면, 원고가 47,000,000원(부가세별도)의 총 공사대금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므로 적어도 7,700,000원(= 51,700,000원 - 44,000,000원)의 추가공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23,047,000원의 추가공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원고 사이의 공사계약이 2019. 8. 13. 공사기간만 연장되었다가 2019. 9. 24. 10,052,000원이 감액된 점, 피고 스스로 추가공사대금이 7,791,680원이라고 주장한 점 등을 고려하면, 을 제1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7,700,000원 이상의 추가공사가 있었고, 그 추가공사비를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피고에게 추가공사를 포함한 총 공사비 51,700,000원에서 변제액 30,000,000원을 제외한 21,700,000원과 이에 대한 2020. 1. 24.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 중 위 돈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지급명령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대금이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를 위 인정범위에서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조병대